

직인생략

[illegible]

香 丕

선 결 접 수	일자		지 시 결 재 · 공 람		
	시간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디지털은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건

1. 화련 제429호 (2013.11.21)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하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100만원, 6개월간 기록보관을 누락했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일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 장착기간 연장이라는 근거없는 사실이 돌고 있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운행기록 장치를 미장착하여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등 회원께서는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심재선